

제46차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사무관 김 영 옥

I. 회의 개요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하 ‘UNCITRAL’) 제3실무작업반(이하 ‘제3작업반’)의 제46차 공식회의가 2023. 10. 9.부터 10. 13.까지 비엔나 UN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7개 회원국과, 바레인, 코스타리카, 이집트, 엘살바도르, 시에라리온 등 27개 옵저버 국가의 정부대표단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EU(European Union),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ASIL(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CRCICA(Cairo Regional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IL(Centre for International Law at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CIArb(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CCIAG(Corporate Counsel International

Arbitration Group), ICLRC(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search Center), MPIL(Max Plank Institute for Comparative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 Milan Chamber of Arbitration, USCIB(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등 다양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관도 참석하였다.

제3작업반은 2024년 6월 말 제57차 본회의에서 ‘국제투자법 자문센터 설립에 관한 조항(Provi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n Advisory Centr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이하 자문센터 설립조항)’의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금번 회의에서는 채택 형식 및 조항 초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국제투자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의 절차 및 범분야 이슈에 관한 조항(Provisions on Procedural and Cross-cutting Issues) 초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2025

년 본회의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금
번 회의에서는 일부 조항만 다루고, 2024
년 1월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II. 주요 논의 사항

가. 자문센터 설립조항(WP. 230)

1) 논의 배경

제3작업반은 2017년부터 ISDS 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을 식별하고, 다자적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특히 ISDS 특성상 절차 소요기간과
지출비용이 상당하여 ISDS 제도가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과 같은 국가뿐 아니라 중소
규모의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큰 부담이 되
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를 개
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세계무역기구법 자
문센터(Advisory Centre on WTO Law, 이하
'ACWL') 선례를 참고하여 ISDS 관련 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센터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¹⁾

자문센터가 ISDS 절차 지원, 교육 프로
그램, 세미나 등의 서비스를 통해 개발도
상국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립 취지를 고려

하여 정부간 기구로 설립하되 현재로서는
원칙적인 채택(adopt in principle)을 하도록
하고, 추후 다자문서의 일부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
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설립 문안 성안을
위한 초안²⁾ 중 서비스 범위, 수혜자, 운영
구조 등과 관련하여 국가 간 이견이 존재
하였다.

2) 일반 원칙

설립문안 초안 제3조는 자문센터의 일
반 원칙에 관한 문안이다. 자문센터의 운
영이 ① 효과적(effective)이고 지속가능한
(sustainable)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②
외부의 영향(external influence)을 받지 않
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③ 자문센터 설립
목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타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
하여 대다수의 국가가 지지하였다.

다만 미국과 스위스는 '지속가능한 운
영'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한바, 예컨대 재
정적인 영역에서의 지속가능성이라면 이
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도는 개발도상국
등의 자문센터 서비스 이용 혜택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접근이 용이하고(accessible)
적절한 수준의 비용으로(affordable) 운영되

1) A/CN.9/WG.III/WP.168

2) A/CN.9/WG.III/WP.230

어야 하는 원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ISDS 절차 서비스 제공시 회원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자문센터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영향’을 ‘부당한 영향(undue influence)’으로 수정하도록 하는 의견도 제기되었고, 협력의무 범위에 국제기구뿐 아니라 지역기구(regional organization)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3) 회원자격 및 운영구조

설립문안 초안 제4조는 회원자격에 관한 문안이다. 제4조 제1항의 주권 국가와 지역경제통합기구만이 자문센터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초안 규정에 대하여, 많은 회원국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러시아는 회원 자격 외에도 읍저버 자격 허용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CIArb는 NGO와 MSMEs(micro-,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이하 ‘MSMEs’)도 회원 자격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동조제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안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설립문안 초안 제5조는 운영구조에 관한 문안으로, 운영이사회(Governing Board)와 사무국(Secretariat)으로 구성되는 2단계 운영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많은 회원국은

이러한 2단계 운영구조가 자문센터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인도와 아르헨티나는 운영이사회의 구성시 지역성(regional)과 법조계(jurisdiction)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운영이사회 의사결정시 표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구분, 필요 정족수, 회의 개최주기 등도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4) 제공 서비스 및 서비스 수혜자 범위

설립문안 초안 제6조와 제7조는 자문센터가 제공하게 될 두 가지 핵심 서비스에 관한 문안으로, 각각 ‘기술적 지원 및 역량 개발’, ‘ISDS 절차 관련 지원’에 대한 것이다. 제6조의 서비스는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자문, 정보 교환 등을 상정하는 반면, 제7조는 분쟁발생 초기대응, 중재·조정인 선정, 서면 및 증거 준비, 대리 서비스 등 ISDS 절차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상정하는 것이므로, 서비스 범위 및 수혜자 등을 판단함에 있어 두 조항 간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EU, 콜롬비아, 시에라리온, 인도, 아르메니아, 칠레 등의 국가들은 제6조와 제7조의 서비스 모두가 개발도상국에 매우 필요한 서비스임을 강조하였으나,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국가들은 제7조의 서비스는 상

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이므로, 자문센터의 한정된 자원 대비 업무 과중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회원국의 ISDS 대응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6조의 서비스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제7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의견을 제기하였다.

제7조 서비스 범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ISDS 대응 역량이 부족한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에 ISDS 절차 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ISDS 절차 전 단계에 걸친 연속적인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던 반면, ISDS 절차 초기, 예컨대 중재판정부 구성 전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실질 절차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대응하도록 하는 방법과 같이 현실적으로 제공 가능한 범위를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제7조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 및 우려사항도 지적되었다. 절차지원 서비스의 질(quality) 문제, 사건의 결과가 회원국에게 불리한 경우 책임 소재 제기 가능성, 본 서비스에 수반되는 예산부담 문제, 외부 대리인 선임시 이해충돌 문제, 자문센터의 독립성 저해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 내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제6조와 제7조 서비스 제공 분야에 국가 간 분쟁(State-to-State Dispute, 이하 ‘SSDS’)의 포함여부와 관련해선, 스위스, 콩고, 호주 등은 이를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EU, 시에라리온, 이란, 케냐는 SSDS는 ISDS와 메커니즘이 다르므로 ISDS와의 구분을 위하여 SSDS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비회원의 참여(서비스 제공자 내지 수혜자) 허용 여부에 대하여 회의 초기부터 국가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우선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파나마,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은 자문센터의 한정된 자원, 이해충돌 우려, 형평성 저해, ISDS 제소 증가 등을 이유로 비회원국과 MSMEs에 대한 제6조와 제7조 서비스 제공을 전면 반대하였다. 반면,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회원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안상 비회원에게 서비스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적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의 정의 및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미국, 영국, 호주는 비회원인 최빈국과 개발도상국, MSMEs에게도 사법접근(access to justice)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스위스와 도미니카공화국 등은 비회원에게 제7조의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은 반대하나, 제6조의 서비스에 서 세미나 연사, 교육프로그램 강사, 참석자 등으로 참여하는 자문센터와 회원국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제6조에 국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CIArb, CCIAG 및 USCIB와 같은 옹저버 기관들은 MSMEs의 참여를 전면 반대하는 국가들의 입장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면서 MSMEs도 기본적으로 자문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주로 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 목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또한 MSMEs의 재정 기부 및 참여를 통해 자문센터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기업들이 자문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개발도상국에 더욱 안전하게 투자하여, 중국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시장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MSMEs도 서비스 제공 내지 수혜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비회원의 참여여부 판단 권한과 관련해서는, 현 문안상 사무국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국가들은 사무국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참여허용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자금 및 법적 지위

설립문안 초안 제8조는 자금조달, 제9조는 법적지위 및 책임에 관한 조항이다. 자문센터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운영을 위해 회원국들이 매년 분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담금은 회원국의 경제 발전 정도(sliding scale)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신탁기금(trust funds)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회원국이 갖는 혜택과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서비스 효율을 구분하여, 비회원국의 효율은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 NGO, 기업, 로펌, 개인 등에 의한 기부금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문센터의 독립성과 투명성 관련 원칙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문센터의 법적지위와 책임은 자문센터가 UN산하기관으로 설립될지 여부와 소재지협정(host country agreement)에 따라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인바,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센터의 법인격 및 상근직원들의 면책특권과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의 필요성 정도만 언급되었다.

나. 절차 및 범분야 사안(WP.231)

금번 회의에서 두 번째로 논의한 안건은 25개의 절차 및 범분야 사안³⁾에 대한 조항 초안이었다. 동 조항은 ISDS 절차를 세 개의 Section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는데, 즉 Section A는 청구 제기(Submission of a claim), Section B는 절차의 이행(Conduct of the proceedings), Section C는 중재판정부의 결정(Decisions by the Tribunal)로 구성되어 있다.

Section A는 투자자가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사전 요건들(냉각기간, 국내구제절차, 포기)과 제한·예외사항(제척기간, 혜택의 거부, 주주청구)을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의 반대청구 및 규제권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주권국가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Section B와 C는 중재뿐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될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며,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명확성 증대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제3작업반은 세부 문안에 대하여 논의하기에 앞서, 절차 및 범분야 사안이 제3작업반의 위임범위(mandate)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여러 의견을 교환하였다. 스위

스, 미국, 인도, EU 등은 제3작업반의 검토 의무는 ISDS의 절차적인 사항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반면 파나마, 에콰도르, 콜롬비아, 아르메니아, 베네수엘라 등은 제3작업반의 위임범위는 ISDS의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광범위한 의무를 갖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또한 작업반은 절차 및 범분야 사안 조항의 성격 및 규정 형태, 즉 ① ISDS 절차 모델 조항(model provision)으로 합의하는 방안, ② 다자간 체제 의정서(protocol)로 합의 후 국가가 개별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opt-in), ③ UNCITRAL 중재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입장을 개진하였는데,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은 절차 규칙을 선택적으로 취하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모델 조항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콜롬비아, 아르메니아, 캐나다 등은 조항의 내용에 따라 일부 조항은 UNCITRAL 중재 규칙 개정하는 방식으로, 일부는 다자간 체제 의정서 내지 모델조항으로 채택하는 방식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25개의 조항을 다 다룰 수 없으므로, 검토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국가별 의견을 청취하였고, 제3작

3) A/CN.9/WG.III/WP.231

업반 의장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23조 손해와 배상액의 산정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Section A, B 순서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1) 손해와 배상액의 산정

절차규칙 제23조 조항의 취지는 ISDS 판정에서 각 관정부마다 다른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금전배상원칙, 수용시 재산반환, 판정 전·후 이자, 산정근거 요소, 입증, 손해전문가 사용, 징벌적 손해배상의 금지 및 비용의 분배 등에 관한 규정이다.

우리나라는 ISDS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손해와 배상액의 산정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고, 현재 별도로 규제되고 있지 않은 손해산정 방식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와 전문가에게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조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시에라리온, 파키스탄, 인도, 칠레 등도 중재판정부가 추정에 근거하여 내리는 과도한 손해액과 판정의 비일관성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다자협약 또는 국제투자협정(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As)에 포함시킬 구속력 있는 규범조항 마련에 대하여 지지하였다.

그러나 미국,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손해산정은 개별사건의 성격과 사

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국가마다 다양한 정책적 상황 및 규정이 있으며, 국제관습법상 ‘완전 배상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왔는데, 손해산정 방식을 단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관습법에 반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였다.

제2항 ‘이자 산정방식 및 기준’과 관련, 우리나라는 ISDS 중재절차는 수년이 소요되어 복리 이자율 적용시 이자금액이 급속도로 배상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리 이율을 선호하고, 현 문안에 기재된 ‘합리적인 이율’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정의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도, 파나마, 멕시코 등은 무분별한 손해액 증가의 원인이 되는 복리 이자율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반면,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는 ‘완전 배상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 복리 이자율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4항 손해의 입증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에 관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고, 추상적인 손해배상을 제한한다고 규정한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지지를 표명하였다. 미래 현금(future cash flow)을 사용한 손해액 산정방법을 명시하는 것과 관련, 스위스와 캐나다는 특정 손해액 산정방식을 제안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등에 상술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입장을

개진한 반면, 칠레, 시에라리온, 콜롬비아, 파나마 등은 현금 흐름 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DCF)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며, 중재판정부가 DCF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여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8항 청구인의 투자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금전 배상을 명할 수 없다는 규정 관련하여, 아르메니아,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인도 등은 이에 대하여 지지 의견을 표하였으나,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은 완전 배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도 과도한 판정 손해배상액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국제관습법상 법리와의 조화가 필요하고, 위 문제는 제25조의 ‘비용 분배’ 관련 조항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2) 협의·협상

위 Section B의 제23조에 관한 논의를 마친 후, 의제 초반으로 돌아가서 Section A의 범분야 사안 조항 제1조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1조는 정식 분쟁해결절차 개시 전후로 분쟁 당사자는 언제든지 협의와 협상(consultation and negotiation)을 통하여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안으로, 이에 대한 당사자간 협력 의무, 회부시점, 협의·협상 요청시 요구되

는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동조에 대하여 이미 제45차 제3작업반 공식회의와 제56차 본회의를 통하여 ‘조정(mediation)’ 조항을 성안한 바 있고, Section A의 제5조 우호적 분쟁해결 조항과 다소 중복되어 보이는바, 제1조와 제5조를 정리하여 이와 관련된 조항을 다시 새롭게 작성하여 검토하기를 요청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의장은 사무국에 해당 문안을 재작성하도록 요청하겠다고 정리하였다.

3) 국가 간 분쟁해결

범분야 사안 조항 제4조는 국가 간 분쟁해결(State-to-State Dispute, SSDS)과 관련된 조항으로, 협정 체결국은 자국 국적 투자자를 대위하여 UNCITRAL 중재규칙 내지 협약상 분쟁해결 조항에 따라 타방 체결국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본 조항은 브라질이 체결한 다수의 투자보장협정(BIT)에 반영되고 있는 추세인바, 브라질은 SSDS는 현 ISDS 모델의 대안이 되며, 분쟁의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투자자-국가의 규제권한 간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민간-공공 영역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회원국들은 SSDS 조항은 극히 소수의 조약에서 다루고 있는 조항이고, 사실

상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와 유사한 것으로, 중재제도에 이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 견해를 표하였다. 이에 따라 의장은 브라질의 SSDS 모델이 충분히 발전되어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주권국가의 정책 영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조항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4) 국내 구제 절차 소진

범분야 사안 조항 제6조는 ISDS 제기 전 투자자는 국내구제절차를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요건에 관한 조항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EU 등 국가들은 국내구제절차 완료가 효율적이지 않고, 오히려 분쟁기간이 더 지연되고 비용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국내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장려할 수 있으나 이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반면 인도, 브라질, 코트디부아르 등의 국가들은 국내구제절차 소진 원칙은 국제관습법상 인정되어온 중요한 원칙이고, ISDS 제소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의무조항이 되어야 한다면서 동조를 지지하였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국내구제절차 소진 조항은 남미 국가들의 관련 협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에콰도르는 국내 법원이 투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의장은 국내구제절차소진과 관련해선 근본적으로 국가 간 정책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UNCITRAL 사무국으로 하여금 국내구제절차를 장려하나 강제성을 띠지 않는 문안으로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고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III. 평가 및 시사점

자문센터의 설립조항은 제57차 본회의에서 성안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를 통해 자문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개발도상국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하였으나, 비회원의 자문센터 서비스 이용여부 및 절차지원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혜 대상에 대해서는 국가 간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25년 1월)에서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 및 범분야 사안 조항에 대하여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어 문안 세부 사항에 대한 진전보다는 일반적 논의를 통해 각 국가의 입장 파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으며, 투자법원 및 상소제도 등이 잔여 의제로 남아 있는 현 상황에서 2025년까지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

그러나 제3작업반은 ISDS 제도 개혁 논의가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다자 협의체이므로, 우리나라도 2024년 의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계속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끝.